

# [ 2017년 연말정산 ] 제출서류 안내



서울시50플러스재단

#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 증빙서류 편철 순서

1. **부양가족 현황**(제출서류 맨 앞장에 위치)
2.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17년도 중도입사자에 한함
3.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4. **보험료 증빙서류**
  - 1) 2017년 귀속 세액공제증빙서류 [보장성보험] - 국세청자료
  - 2) 소득·세액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 자료(국세청자료 누락된 분에 한함)
5. **의료비 증빙서류**
  - 1) 2017 귀속 세액공제증빙서류 [의료비] - 국세청자료
  -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요양기관 자료
  - 3) 의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의료기관 자료
6. **교육비 증빙서류**
  - 1) 2017년 귀속 세액공제증빙서류 [교육비] - 국세청자료
  - 2)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기관 자료
  - 3)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교육기관 자료
7.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증빙서류**
  - 1) 2017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주택마련저축] - 국세청자료
  - 2) 2017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국세청자료
  - 3) 2017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국세청자료
  - 4) 기타 관련 증빙서류 - 해당기관 및 본인자료
8. **기부금 증빙서류**
  - 1) 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자료
9. **지역국민연금(지역건강보험) 및 연금계좌 증빙서류**
  - 1) 지역 국민연금·지역건강보험 납부영수증 - 공단 자료
  - 2) 2017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퇴직연금] - 국세청자료
  - 3) 2017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연금저축] - 국세청자료
  - 4) 퇴직연금 납부영수증 - 금융기관 자료
10. **개인연금저축 증빙서류**
  - 1) 2017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개인연금저축] - 국세청자료
  - 2) 개인연금 납부영수증 - 금융기관 자료(국세청자료 누락된 분에 한함)
1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빙서류**
  - 1) 2017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신용카드 등] - 국세청 자료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금융기관 자료
  - 3) 2017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현금영수증] - 국세청 자료
12. **기타 자료**
  - 위의 증빙서류 외 서류

## 2.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1) 복사(FAX)본 불인정

-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임직원에게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반드시 제출

-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내용이 없더라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3) 2017년도 중도입사자

(1) 2017년 중도 입사자 중 근로 미제공 기간에 사용된 지출금액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 미제공 기간의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월별 소득공제내역(상세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2017년에 전 근무지의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4) 인적공제와 소득·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분리적용 불가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을 경우 해당 자녀에게 사용한 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는 배우자인 아내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타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도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5) 보험료 증빙서류

-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공제 증빙서류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표기된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 6) 의료비 증빙서류

(1) 국세청자료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의 중복 제출 금지

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2017년 귀속 소득공제 증빙서류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국세청 자료에 누락된 내용을 의료기관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의료기관발급)로 추가할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은 붉은 색으로 선을 긋고 '금액제외'라고 표기한 후 금액 합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③ 동일금액을 중복 기재하여 향후 국세청 소명자료 제출 시 부당공제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의료기관에서 일괄 발급하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출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개별건으로 발급 받은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의료비 증빙서류로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안경구입비 제외)

## 7) 교육비 증빙서류

- (1)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이용료 영수증은 법정서식 제출해야 합니다.  
-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은 허가된 기관이어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교육기관이 확인한 납입증명서만 인정됩니다.
- (2)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등은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교복 구입비는 일반영수증 가능)
- (3)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8) 기부금 증빙서류

- (1) 기부금은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에 기부단체가 확인한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 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금액입력은 불필요)
- (3)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4) 급여 공제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한 기부금은 등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노조회비,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등)

## 9) 주택자금공제 증빙서류

- (1)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외 다른 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금액입력은 불필요)
- (2) 2016년 신입 또는 2016년 중도입사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국세청 또는 금융기관)
  - ② 건물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 ③ 2006년 1월 이후 차입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처 : 관할 시·군·구청, 인터넷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3)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차입금이자 공제는 1995~1997년 기간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차입한 자금이 공제대상 입니다. 이때 증빙자료는 관청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적공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관련)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족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의료기관		
주택자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료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국세청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본인작성	
월세액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http://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http://efamily.scourt.go.kr))

##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li> <li>○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li> </ul>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li> <li>-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li> </ul> </li>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li> <li>-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계약기간 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li> </ul> </li> </ul>
주택마련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li> <li>○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li> </ul>
신용카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li> <li>○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li> </ul>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li> <li>○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li> </ul>
보험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li> </ul>
의료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li> </ul> </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li> </ul>
교육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 ~ 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li> <li>○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li> <li>○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li> </ul>
기부금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li> </ul> </li> <li>○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li> <li>-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li> <li>-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li> <li>-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li> </ul> </li> </ul>
월세액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li> <li>○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li> <li>○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li> <li>※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li> </ul>